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30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30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나881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09가합107636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6476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438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나88172 판결

판결선고 2012. 3.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3조 제1항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다59724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은 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라고 하여 달리할 것이 아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한민국이 원심 판시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5. 1. 1. 원고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현물로 출자한 사실, 서울특별시 1985. 9.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빗물펌프장(이하 '이 사건 빗물펌프장'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관리하다가 1988. 5. 1. 구 지방자치법(1989. 12. 30. 법률 제4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빗물펌프장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피고가 현재 이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는 그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부지인 토지도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빗물펌프장의 신축은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빗물펌프장과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공공시설인 이 사건 빗물펌프장의 관리자인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은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빗물펌프장의 설치를 위해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봐도 그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빗물펌프장이 관리자인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